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실천하고 정책자금 융자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전보건관리 우수 중소 · 벤처기업 지원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10월 2일 '중소 · 벤처기업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책자금 융자 결정 시 안전보건관리가 우수한 중소 · 벤처기업을 우대하여, 기업 및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 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은 안전 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등을 받은 중소 · 벤처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들 기업이 정책자금융자를 신청하면 기업 당 대출한도를 기존 60억(지방 70억)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기업평가 등 심사과정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중소 · 벤처기업의 산재 감소를 위해 안전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 안전경영활동 지침서(매뉴얼), 안전관리수준 진단 평가표(모듈)를 공동 개발하고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에도 나선다.



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2주간(2019.10.28~11.8)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지난 10월 12일 평택 시 소재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하여 개인 보호구 지급 · 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감독결과를 기반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11월 1일부터 연 1.5%로 인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도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1일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줄어들어 약 25만 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만 7390명에게 약 1조 3천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9년 월 251만 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9월 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내 손안의 정보,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발송 실시
-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충족 대상 및 생활안정 대부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모바일을 통해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열람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발송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되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울러 동절기를 맞이하여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발송 대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카카오톡, MMS)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을 원하는 분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없이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제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해당 고지·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될 경우 서비스 수혜 대상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